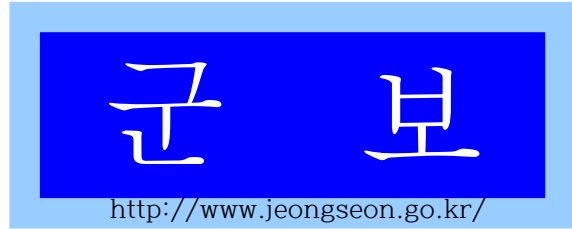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2호 2022. 3. 16.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220호 분묘개장 공고(2차).....1
- 정선군 공고 제 2022-251호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업)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2
- 정선군 공고 제2022-256호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공고.....5
- 정선군 공고 제2022-257호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9
- 정선군 공고 제2022-276호 지적재조사사업(유천지구) 완료 공고.....16
- 정선군 공고 제2022-278호 지적재조사사업(남면문곡지구) 완료 공고.....1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220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북평 소2-19호(어린이놀이터 옆)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지구 내 설치된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개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정 선 군 수

1. 분묘위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04-19
2. 분묘개수 : 2기(연고자 불명)
3. 개장사유 : 북평 소2-19호(어린이놀이터 옆)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내 편입
4. 개장방법 : ①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②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50일간
6. 안치장소 :
 - 화장장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정선군 하늘터)
 - 봉안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송동원길 203(정선 하늘공원)
 -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 고 자 : 정선군수(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분묘자(고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신고 및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456)
11. 기 타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 시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 2022-251호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업)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업) 운영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정 선 군 수

1. 모집개요

- 가. 모집기간 : 2022. 3. 4.(금) ~ 3. 11.(금) 18:00까지
- 나. 모집지역 : 전국
- 다.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15명(평가위원의 3배수 모집)
- 라. 모집분야 : 산림, 산림복지 분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2. 응모자격 및 자격제외자

가. 응모자격

- 1)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2)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 해당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나. 자격제외자

- 1) 해당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 3) 최근 3년 이내의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평가위원의 제외대상인 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3. 4.(수) ~ 3. 11.(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공문발송(비공개), 우편, 이메일 접수로 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1) 접수장소 :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 이메일주소 : rhkdtjd123@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반송되는 사례가 있어 발송 5분 후 수신여부 확인(033-560-2157)

※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 이메일 제출은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청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 동의서는 친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친필 서명 또는 날인된 파일을 PDF형태로 제출

※ 4)의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것 이어야 합니다.

(단, 기관장 명의 전자공문 제출 시 재직증명서는 생략가능 하되, 반드시 해당 부서 근무경력을 기재)

4.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자 : 2022. 3. 16.(수)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5명

다. 선정방법 : 선정위원 5명의 3배수인 15명의 예비위원 중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추천하여 선정

※ 다빈도 순으로 결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 또는 메일 통보

라. 선정결과 통지 : 선정된 위원 개별 통지

※ 연락불능, 불참 시 차순위 섭외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2. 3. 18.(금) 14:00 ~

나. 장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2층 소회의실

※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유선 개별연락)

다. 평가내용 :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업) 운영사업 제안서 등

7.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임명된 것으로 하며, 평가가 끝난 후 위촉·임명 해제된 것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보내주신 자료는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업)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집 분야의 경력인정 여부는 정선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바. 후보자는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2-256호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공고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활력 계획에 우리군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정 선 군 수

1. 공 모 명 :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22. 3. 14. ~ 3. 31. (17일간)
- 응모자격: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정선군민
- 공모주제: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 결혼·임신·출산·육아·청년·노인 분야 등 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
 -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 일자리 창출에 관한 대책 방안
 - 기타 인구활력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등

< 공모 제외 대상 >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자치단체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모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공모신청 및 제안서 각 1부.
 - ※ 신청서는 정선군 홈페이지(www.jeongseon.go.kr) “고시공고” 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내 “군민제안” 신청
 - ※ 제목 :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로 기재
 - ※ 공개여부 : 비공개로 신청
- 메일접수: edu0411@korea.kr
- 우편접수: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기획팀 앞 (우 26131)
- 방문접수: 정선군청 본관 2층 기획관실 기획팀

4. 심사 및 시상계획

- 심사기준: 시행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종합평가
- 심사방법
 - 1차 : 예비심사(제안업무 담당부서별)
 - 2차 :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 심사발표: 2022. 4. 8.(군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시상내용

구 분	대상	우수상	장려상
선 발	1	1	2
시상금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50만원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30만원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15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가 조정될 수 있음.(동점자 나올 경우)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선정함
- 제안 내용이 표절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금 환수 조치
- 수상작에 대한 사용권(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정선군에 있으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 수정될 수 있고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 미기재

제안명(사업명)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2022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선군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정선군은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수집목적)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보유 및 이용기간)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기관 및 부서) 정선군 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 . . 동의자 _____ (서명)				

정선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제안명 (사업명)	
제안내용	○ - ○ -
현황 및 문제점	○ - . ○ -
개선방안	○ - . ○ -
기대효과	○ - ○ -

정선군 공고 제2022-257호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획관

- 연락처 : 전화(033-560-2214), 팩스(033-560-2592)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자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등)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2.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지원 사업
4.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귀농귀촌 지원 사업
6. 일자리 · 문화 · 교육 · 복지 · 주택 ·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7. 가족친화 · 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사업
8. 인구관련 교육 · 홍보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기업 · 법인 ·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 출산 · 보육 · 보건 · 교육 · 가족 · 노인 정책, 일자리 정책, 귀농 · 귀촌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 단체의 임직원
 -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 획 관 서 건 회

정선군 공고 제2022-276호

지적재조사사업(유천지구)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 「유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유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정선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220필지 / 1,154,443㎡
4. 공람기간 : 2022. 3. 8. ~ 2022. 3. 22. (15일간)
5. 공람장소 : 정선군청 민원과(지적재조사팀)
6. 공람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정선군 공고 제2022-278호

지적재조사사업(남면문곡지구)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 「남면문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남면문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정선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508필지 / 184,320.2m²
4. 공람기간 : 2022. 3. 8. ~ 2022. 3. 22. (15일간)
5. 공람장소 : 정선군청 민원과(지적재조사팀)
6. 공람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